

2008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11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라 작성한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임.

2. 주요 내용

가. 2008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괄내역은 토지매입 2건, 건물 신. 증축 2건 등 취득 4건, 73,199㎡, 1,670,848천원이고, 처분은 없음.

나. 토지 취득 2건은

- 진부장례식장 부지매입 3필지 2,441㎡ 77,904천원
(주민생활지원과)
-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부지매입 32필지 69,828㎡ 392,944천원 등
(환경과) 2건 35필지 72,269㎡ 470,848천원이고

다. 건물 신.증축 2건은

- 대화면분회 경로당 신축 1동 500,000천원(주민생활지원과)
- 본청 창고 증축 1동 700,000천원 등(재무과)
2동 1,200,000천원임.

3. 관계법령

가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

《관계법령 발취》

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 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』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(매입, 기부채납, 무상양수, 환지, 무상귀속, 교환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예정가격에 있어서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취득 또는 처분 시 1건당 5억원 이상인 재산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『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』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

정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“개별공시지가”라 한다)로 하고,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『지방세법』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.

2. 토지에 있어서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취득은 1건당 1천 제곱미터 이상, 처분은 1건당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재산